

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본 안건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의정업무에 대한 행정환경이 변화되고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한 전자결재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 추세에 맞추어 시의회 내에서 발송하는 문서에 대해 전자문서용 전자 직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일부 운영상 불합리한 조항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- 주요 개정안을 말씀드리면,
먼저, 직인의 종류에서 현행 “각 상임위원회 위원장”에 특별위원회 위원장”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 운영상황에 맞게 조정하고, 둘째, 그동안 시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직인의 종류를 “부천시의회 사무국장” 직인으로 잘못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번 개정안에 바로잡아 “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” 직인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.

- 그리고, 이번 개정의 핵심 사유로서 “부천시의회의회장 직인과 부천시의회사무국장 직인을 이미지화하여 “전자문서용 전자직인”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의회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- 『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바와 같이 심사 의결되어 [원안의결](#) 되었다

부천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00
의결년월일	2007. 3. 22

제안년월일: 2007. 3. 9

제안자: 의회운영위원장

□ 제안이유

- 행정업무의 전자화 촉진 등에 따라 전자결재 시스템에 의한 전자 문서 시행이 보편화 되고 있는 현 추세에 맞추어 시의회에서 시행하는 대내·외 발송 문서에 전자문서용 전자 직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일부 운영상 불합리한 조항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직인의 종류에 “특별위원회 위원장”직인을 추가하여 규정함.
(안 제2조제2항제3호)
- 시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직인의 종류를 당초 “부천시의회사무국장 직인”에서 “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”으로 변경 하여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함. (안 제2조제3항)
- “부천시의회의회장 직인” 및 “부천시의회사무국장 직인”을 이미지화 하여 전자문서용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.
(안 제2조제4항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의회공인조례”를 “부천시의회 공인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 제4항중 “제2항제2호”를 “제2항제3호”로 하며,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

⑤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직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문서용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부천시의회공인조례</u></p> <p>제2조(종류) ① (생 략)</p> <p>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2. (생 략)</p> <p>3. <u>각 상임위원회 위원장</u></p> <p>③ (생 략)</p> <p>④제2항제2호의 직인은 부천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부천시의회 공인 조례</u></p> <p>제2조(종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제2항제3호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⑤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직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문서용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.</p>